

지식재산권(IPR)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중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for Korea's Arbitr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disputes

송수현**

Su Hyun Song

전운***

Un Jeon

안건형****

Keon-Hyung Ahn

〈목 차〉

- I. 서론
 - II.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지식재산분쟁의 중재 적합성
 - III.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및 국내외 IP중재 현황
 - IV. KCAB 지식재산중재 활성화 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분쟁의 중재적합성, 지식재산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 이 논문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주최한 「2023 상사중재논문경시대회」에서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송수현, 전운 학생 팀(지도교수: 안건형)이 우수상을 받은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학부생, 제1저자, Email: susuhsong@naver.com.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학부생, 공동저자, Email: viva0108@naver.com.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mail: khahn20@kgu.ac.kr.

I. 서론

종래의 상거래에서 유형적인 물품에만 가치를 두고 재산으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 점차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지식, 예술 및 문화 등의 무형적인 재산의 창출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저장, 공유 및 활용되는 무형적인 재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은 대부분 고부가가치를 갖는 권리이므로 이 분야의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창출에 관한 관심에서 나아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기업 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각국에서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국제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지식재산권 분야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한 만큼 앞으로 중재가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원과 인구가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의 개발 및 발전이 중요하다. 최근 기술의 향상과 플랫폼의 증가로 인해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지식재산의 장벽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콘텐츠 등의 지식재산이 창출되어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이 출원한 국제특허(PCT)는 22,012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이미 2007년부터 한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5대 강국의 위상을 향유하고 있다.²⁾

이에 발맞추어, 한국은 지식재산권 창출에서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특허분쟁 분야에 대한 특허소송 뿐만 아니라 중재 시스템의 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다. 이로 인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분쟁을 한국이 아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서 진행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³⁾ 해당 사례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내지 제도적 정비가 아직까지 현저히 부족하다는 국내의 실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즉,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분

1) 이주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의 활성화 방안”, 『仲裁研究』, 제23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P. 167.

2) 특허청, “한국, 3년 연속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 산업재산통상협력팀, 2023.03.02.

3) 송복규, “백만기 지재위원장 “K콘텐츠 경쟁력 지키려면 지식재산권부터 챙겨야””, 『조선일보』, 2022.12.07, available at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2/12/07/TTO2RS45VJFBBLJTM6SYLYP5I/> (2023.04.12. 최종접속).

쟁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해결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뒤처지지 않도록 힘쓰며, 지식재산권 창출과 더불어 보호 측면에서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내 유일의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역량을 개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체제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Uruguay Round) 초기 15개 협상 의제에서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었고 이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협정 중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내용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목이 국제성을 갖는 무역환경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기구 및 기관들은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국내외 중재기관들의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여, 지식재산중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더 많은 지식재산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문헌, 국내외 관련 전문기관들의 보고서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중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지식재산분쟁의 중재 적합성

1. 선행연구

우선, 본 연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 분쟁의 현황 및 중재, 지식재산중재 관련 연구들을 요약·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 분쟁사례와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중재기관들의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IP 중재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지식재산중재의 인식과 현행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정리표

| 선행연구 | 지식재산중재의 인식과 실정 |
|------------------------------|--|
| 윤선희 (2012) ⁴⁾ | 1)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기본법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규정(제22조)을 통해 지식재산중재 기반이 마련됨, 2) 소송에 비해 전문성과 신속함이 더 높은 중재의 중요성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높아지고 있음, 3) 중재인들의 지식재산중재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논의 활성화 필요 |
| 이병준 (2012) ⁵⁾ | 1) 소비자중재 제도 필요, 2) ODR 제공 플랫폼 구축 및 ODR 제공자 역할 선점 필요, 3) ODR 실무작업반에 관한 중재법 전문가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논의 참여 필요 |
| 최소희 (2012) ⁶⁾ | 1) 중재의 법정 판결 차이와 불확실성 제거 및 신속성, 2) 합의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 선정 가능, 3) 문서 제출 범위 및 규모 자율 조정 가능, 그러나 4) 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와의 분쟁, 중재적합성, 단심제로 인한 부담감 등에 관한 논의 필요, 5) 전문성이 높은 중재인 확보와 양성에 관한 투자 필요 |
| 최승재 (2012) ⁷⁾ | 1) 복수 국가 간의 특허분쟁을 일거에 해결 가능, 2)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보편성, 신속성 및 중재인의 전문성이 높지만, 3) 특허의 무효와 침해가 분리된 이원적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의 중재 적격성 문제 논의 필요 |
| 김정화 (2014) ⁸⁾ | 1) 영업 비밀 보호와 신속성으로 중재의 게임 분쟁 해결 잠재력에 대한 높은 평가, 그러나 2) 국내의 게임 산업 전반 및 게임 분쟁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중재 인력 양성 필요 |
| 박은아 (2014) ⁹⁾ | 1) IP 관련 국제분쟁에서 조정 및 중재절차 사용이 증가함, 2) 분쟁 당사자 및 변호인들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선호 이전(융통성, 기밀유지 가능, 신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 3) 대표적으로 UN기구인 WIPO센터에서 IP분야 분쟁해결이 특화됨 |
| 박경희 (2020) ¹⁰⁾ | 1) 소프트웨어 전문 중재인 Pool 확대 필요, 2) 선별적인 중재 비용 지원제도 적용 필요, 3) 중재조항을 표준계약에 포함하고 있는 중개업체와 협업 필요, 4)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에 관한 특수성 등의 지식 공유 필요 |
| 이동국 (2021) ¹¹⁾ | 1) IT분야 분쟁에서 양 당사자 간의 추가개발, 보수 및 정보제공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중재의 심리 진행과 병행하도록 권장, 2) 중재판정은 중재법에서 정해진 형평과 선을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아 판정할 것을 권장 |

4) 윤선희,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재인들의 관심이 필요”, 『仲裁』 제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pp. 3-5.

5)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분쟁에 대한 온라인 분쟁해결과 중재”, 『仲裁』, 338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pp. 50-55.

6) 최소희,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仲裁』, 338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pp. 18-25.

7) 최승재,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중재제도(WIPO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2012가을거울』, 338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pp. 6-16.

8) 김정화, “게임 분쟁과 중재”, 『2014봄여름』, 34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4, pp. 49-51.

9) 박은아,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분쟁”, 『2014봄여름』, 34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4, pp. 56-61.

10) 박경희, “소프트웨어 분야 중재사건의 주요 특징 및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제언”, 『2020봄여름』, 353호, 대한상사중재원, 2020, pp. 30-38.

11) 이동국, “IT중재(소프트웨어) 분야 중재사건 심리의 특징”, 『2021봄여름』, 355호, 대한상사중재원, 2021, pp. 100-103.

2. 지식재산권의 의의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활동을 통한 발명, 과학적 발견, 문학, 예술 및 학술저작물, 공연, 방송,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¹²⁾ 및 상호, 기타 상업상의 표지 등 산업, 미술, 학술, 문예 분야에서의 지적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모든 권리를 통칭한다.¹³⁾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문화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과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산업재산권이다.¹⁴⁾ 또한 저작권은 다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일별할 수 있다. 그 외에 영업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신지식재산권과 같이 새로운 권리들도 지속해서 생겨나고 있다.¹⁵⁾

지식재산권 분쟁사례들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먼저 지식재산권과 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분쟁들의 특징을 우선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전문성’을 갖는다. 정보, 지식 및 기술 등의 전문성이 높은 활동들로 지식재산권이 구성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분쟁 또한 해당 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는다. 둘째, ‘국제성’이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무체물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지식재산권은 국가간 이동과 이전이 쉽고, 침해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무체재산권을 구체화하는 물리적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라면 국경을 막론하고 이용되기에 분쟁 또한 자연스럽게 국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⁶⁾ 셋째, 산업발전 속도와 비례하여 빠른 속도로 지식재산권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넷째, ‘비공개성’이다. 보호 대상이 기술과 지식인만큼 유출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자는 측정이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비공개성이 크게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¹⁷⁾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문화 및 산업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권리로,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속지주의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성립, 소멸과 그 내용은 그 지식재산권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그 효력은 해당 국가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속성”을 말한다.¹⁸⁾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각국의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보호 받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권리가 다른 국가에서까지 행사될 수 있

12)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표가 상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13) WIPO,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No. 489, 2004, pp.2-14.

14)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仲裁研究』,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p.126.

15) 우광명·서민교,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한 ADR의 적용성”, 『貿易學會紙』, 제33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8, P. 266.

16) 김용길, “지식재산권분쟁의 재판외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pp.68-70.

17) 이주연(2013), 전계논문, pp.169-170.

18) 손경환, “국제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 『仲裁研究』,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P.73.

는 것은 아니다. 즉, 각국에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와 달리, 글로벌화와 세계적 무역자유화 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유통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권리자의 보호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기술, 디자인, 서비스 등은 국가 간 쉽게 이동 및 이전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국가 개별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들과 실정은 해당 분야의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3. 지식재산중재의 적합성

중재란 사법상의 분쟁을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소송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¹⁹⁾ 이는 협상, 알선, 조정 등의 ADR 방식으로 소송을 대체하고 있다.²⁰⁾ 또한 중재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자체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법률서비스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은 이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²¹⁾ 우리나라도 이를 활성화하고자 현재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설립하였다. 다만 중재는 화해, 협상, 조정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ADR 방식과 달리,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해당 판정을 집행 및 집행취소에 있어서 법원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법원의 소송제도와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기도 하다.²²⁾

따라서 아래 <표 2>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과 함께 중재를 비교하였다. <표 2>에 나타나는 내용은 중재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적합한 근거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19) 중재법 제3조 제1항.

20) 윤선희(2003), 전계논문, p.126.

21) 안건형, “우리나라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仲裁研究』, 제3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1, P.24.

22)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p.5. ; 오석웅, “지적재산권분쟁과 중재제도”,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p.214. 재인용.

〈표 2〉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중재 적합성에 관한 비교표

| 구분 | 분쟁해결 방식 | |
|------|---|---|
| | 소송 | 중재 |
| 전문성 | 법원에 의한 판사 : 적합성 판단 곤란성 | 해당 분야 자체의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을 당사자가 선정 |
| 비공개성 |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개 원칙 | 비밀보장원칙(단, 해당 국가 중재법과 소 속된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참고 필요) |
| 신속성 | - 3심제(엄격한 절차 등) - 1년 반~20년 이상 소요 | - 단심제 (신속한 판정) - 최종적, 확정적 판정 - 신속절차 및 집중심리 |
| 국제성 | - 자국의 이익이 반영된 ‘속지주의 원칙’ - 재판 관할권 문제 등 - 절차와 언어가 정해짐 | -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효력 인정 - 다수 국가 간 분쟁해결 용이 - 사용언어 등 직접 선택 |
| 우호성 | - 법적, 기술적 공방 및 상호 비방 - 엄격, 경직된 분위기 | -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 적은 심리적 부담감 - 상호 공존 결과 도출 가능성 |
| 경제성 | - 십만 달러에서 크게 백만 달러 초과 의 고비용 - 영세기업 부담 및 사업 포기 가능성 | - 중재기관에 따른 합리적 비용 - 변호사 고용의무 없음 - 통역 및 번역, 감정인 등의 추가경비 최소화 가능 - 특허침해분쟁의 경우 특허 소송에 비해 50% 이하로 해결 가능 |

출처: 헌법²³⁾, 국내중재규칙²⁴⁾, 윤선희(2003)²⁵⁾, 손경한·박진아(2004)²⁶⁾, 최송자(2011)²⁷⁾, 박종삼(2004)²⁸⁾, 김성룡·안건형(2012)²⁹⁾, 허대원(2008)³⁰⁾, 강수미(2010)³¹⁾, 우광명·서민교(2008)³²⁾, 오창석(2006)³³⁾, Steven J. Elleman (1997)³⁴⁾을 참고하여 저자들 작성.

23) 헌법 제109조.

24)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9조.

25) 윤선희(2003), 전계논문, pp. 130-137.

26) 손경한·박진아, “지적재산의 국제적 분쟁해결합의”, 『仲裁研究』,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p. 203.

27) 최송자,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仲裁研究』,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pp. 29-30.

28) 박종삼,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관한 논점”, 『仲裁研究』,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 p. 149.

29) 김성룡·안건형, “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1호,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p. 82.

30) 허대원, “지적권분쟁에서의 ADR제도의 이용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 제2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8, P. 182.

31) 강수미,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대상적격”, 『民事訴訟』, 제14권 제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pp. 142-143.

32) 우광명·서민교(2008), 전계논문, pp. 272-284.

33) 오창석, “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국제상사중재의 유용성”, 『법학논총』, 제1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P. 302.

34) Steven J. Elleman, “Problems in Patent Litigation: Mandatory Mediation May provide Settlement Solutions,”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2, 1997, P.772.

이러한 지식재산 분쟁해결에 대한 중재의 장점들은 필수 특허를 공정하며(Fair), 합리적이고(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을 준수하여 라이선스해야 함을 나타내는 FRAND 이슈들과도 부합하여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³⁵⁾

Ⅲ.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및 국내외 IP중재 현황

1. 지식재산권 분쟁

(1) 지식재산권 국제분쟁 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은 기존의 1차 상품 및 2차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에 비해 금전적·비금전적 피해와 손해배상 규모가 크며, 심한 경우 해당 기업의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해당 재산권에 의해 시장선점 주도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은 IP 국제분쟁으로부터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제와 기관을 설립 및 관리하고 있다. 각국의 지식재산중재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한국 기업이 연루된 가장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국제분쟁 사례 일부를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한국 기업 관련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국제분쟁 사례 요약표

| 분쟁사례 | IP유형 | 내용 | 결과 |
|---|------|--|--|
| G&T(한국)가 블리자드, 라이엇 게임즈, 밸브, 위게이밍 등 글로벌 게임사에 소 제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 특허 | 온라인 게임 캐릭터 관리 및 생성 방법 / 아이템 기간 설정 및 횟수 (조작 및 데이터 베이스 관리) /화면 해상도 차별화 | 해당 특허를 미국 회사에 매각한 후 종결됨: 대형 특허전문 관리 회사 대응 여력 부족 |
| SPC(한국) 그룹이 중국 모조 브랜드 기업에 소 제기 | 상표 | 중국 내에서 ‘파리 필링’, ‘파리핑띠’ 등의 운영으로 인한 브랜드 침해 | SPC 승소(2016): 긴 시간 소요로 소송기간 동안 손해 발생 |
| Apple(미국)이 삼성전자(한국)에 소 제기 (미국 법원)(2011-2018) | 특허 |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 1심: 삼성 패소 2심: 1심 일부파기 및 배상액 감액 3심: 항소심 일부파기 최종: 특허소송 취하 및 합의(총 7년 소요) |

35) 박성수, “지식재산권(IP)분쟁, 국제중재 해결 장점 많다”, 「로펌 인사이드」, 448호, 2022.06.13. available at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13/202206_1300033.html (2023.06.22. 최종접속).

| | | | | |
|---|----------|--------|---------------------------------|---|
| 킹 디지털 ENT(영국)가 아보카도 ENT(한국)에 소 제기(서울고등법원) | | 게임 저작권 | 게임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 침해 |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
| LG와 SK 배터리 분쟁 (국제무역위원회; ITC) | LG가 소 제기 | 영업비밀 | LG에서 SK로 이직하는 사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부당 취득 | 두 회사의 합의 : SK가 LG에 2조원 합의금 지급 (양사 분쟁 동안의 경쟁사의 공격적 투자 및 진출 우려) |
| | SK가 소 제기 | 특허 |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 |

출처: 최재호(2018)³⁶, 차상욱(2020)³⁷, kipoworld2³⁸를 참고하여 저자들 작성.

<표 3>에서 다루지 못한 수많은 분쟁 사례가 존재하지만, 보통 선진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문제 제기 또는 소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 또한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WTO TRIPs 조항을 근거로 WTO에 제기된 분쟁의 경우³⁹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해당 평가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선진국이 협정이나 법률을 보다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산업발전 단계가 비교적 우위에 있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해석되어진다. 즉, 기술과 지식을 창출한 국가들이 이러한 재산의 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보호에 힘쓰기 때문이다.

(2) 지식재산권 국제분쟁사례 분석 및 시사점

최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WTO 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의 비중이 높다. 해당 사례들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해낸 시사점은 첫째,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공개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손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이 분쟁에 연루됨으로써 기업이 입는 이미지 타격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IP의 유효성과 시장점유 주도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국가에 속하고 있는 복수의 분쟁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의 명확성 저하이다. 세계화가 많이 진행된 현재에도 국가 간 법률과 제도, 상황이 상이하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연관되어진 소송의 경우에 국가별로 통일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는 특정 국가의 법원 판결이 다른 분쟁 당사자 국가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가능성을 저하시키

36) 최재호, “FTA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pp. 43-56.

37) 차상욱, “표준필수특허 관련 해외 판례와 대비한 우리 ‘삼성 대 애플’사건 판결의 재미미”, 「産業財産權」, 제6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pp. 91-130.

38) 특허청, “LG와 SK의 배터리분쟁! 그 생생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특허청 TV, 2021.07.14, available at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2431065097> (2023.06.15. 최종접속).

39) WTO, “Dispute Settlement”, 온라인 자료(2023.07.01. 최종접속).

는 원인이 된다. 소송을 대신한 중재가 적용된다면, 뉴욕협약으로 인해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어 비효율성을 낮추고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전문성 부족이다. 실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중재와 달리 소송으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사에게 분쟁의 쟁점이 되는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소송에서 판결의 일관성을 저하시켜 해당 분쟁이 3심까지 진행 되도록 한다.⁴⁰⁾ 또한 전문성 부족은 특정 당사자에게 더 관대하게 되어, 미국의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과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특정 법원에 집중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낮은 우호성으로 인한 탄력성 저하이다. 소송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사건들 중 분쟁 당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방안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⁴¹⁾ 즉, 탄력성이 낮은 소송의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따르게 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비용 및 시간적 측면에서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상호 공존을 위한 결과 도출을 기초로 하는 중재로의 해결이 필요하다.

2. 국내의 지식재산중재 현황

(1) 대한상사중재원(KCAB)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만이 중재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는 전무한 상태이고, 다른 기관들은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⁴²⁾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만이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 관련 중재를 실행하는 한국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22. 06. 01. 기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촉된 중재인은 총 1,714명이다. 이는 국내 및 국제 중재인으로 구분되고,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단체·기타, 회계사·변리사로 나누어진다. 그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인 비중은 약 37%(634명)이다. 과거 2014.04. 기준 국제중재인이 218명으로 약 17.8%였던 것에 비하여 국제성과 중립성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등재된 중재인들은 법조계 60.7%(1,041명), 실업계 18.2%(312명), 학계 13.6%(233명), 공공단체·기타 6.7%(115명), 회계사·변리사

40) 박정환,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적합성과 가능성에 관한 사례연구”, 학위논문(박사),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4, pp. 100-112.

41) 박정환(2014), 전계논문, pp. 105-107.

42) 김상찬·이연화, “지식재산권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법학연구』, 제47권, 한국법학회, 2012, P.107.

0.76%(13명)으로 구성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⁴³⁾

〈표 4〉 KCAB 지식재산중재 접수 현황(2015-2022)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누계 | 비율 |
|----|------|------|------|------|------|------|------|------|----|------|
| 국내 | 6 | 12 | 6 | 6 | 12 | 9 | 5 | 4 | 60 | 75% |
| 국제 | 3 | 2 | 5 | 2 | 3 | 0 | 3 | 2 | 20 | 25% |
| 합계 | 9 | 14 | 11 | 8 | 15 | 9 | 8 | 6 | 80 | 100% |

출처: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15~'22년 중재사건 통계자료를 저자들이 정리하였음.

KCAB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간 접수되었던 지식재산 관련 중재사건은 총 80건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평균적으로 1년에 10건의 지식재산분쟁이 접수됨을 의미한다. 반면, 위의 표에서 표시하지 않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지식재산중재 건수는 연평균 1.9건으로 미미하였다. 즉, 거시적으로 지식재산중재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표 4>에 따르면 아직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에 의하면 국제IP분쟁 중 특허분쟁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1건, 181건, 154건, 278건에 달한다.⁴⁴⁾ 그러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식재산중재 접수 실적은 18건에 불과하다.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상품·서비스 분야 중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6건이었다.⁴⁵⁾ 이는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경우이므로 피해 및 분쟁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표 4>에 의하면 2015~2022년 동안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중재 실적은 80건이다. 분명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식재산중재는 2009~2013년 실적에 비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분쟁은 같은 기간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유의해야 한다.

〈표 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평균처리기간

| (단위: 일)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평균 |
|---------|------|------|------|------|------|-------|
| 국내 | 169 | 215 | 198 | 215 | 236 | 206.6 |
| 국제 | 259 | 342 | 360 | 400 | 401 | 352.4 |

출처: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17~'21년 중재사건 통계자료를 저자들이 정리하였음.

43)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중재인 소개, 중재인 현황.(2023.07.05. 최종접속).

44) 한국지식재산보호원(<https://www.koipa.re.kr/home/main.do;jsessionid=F1EE4E8C7A41726C3DE922D9F75A004F?screenTp=USER>)(2023.07.07 최종접속).

45) 특허청, 『2022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정책, 2023. pp. 87-111.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2017~2021년 기준), 국내 기업들은 산업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변리사·변호사와의 상담(49.5%), 내용증명·경고장(39.6%), 항의(33.7%), 민사소송(14.9%), 무대응(13.9%), 특허청에 고소·고발(11.9%)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때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22.4개월⁴⁶⁾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응방안과 함께 계산되었음에도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대응방안 중에서 특히 소송비용은 평균 326,000,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⁴⁷⁾

이와 달리, <표 5>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평균처리시간은 국내의 경우 206.6일, 국제의 경우에는 352.4일이다. 중재사건 접수 분야의 구분 없이 계산된 기간이기에 지식재산중재 사건에 완전히 적합한 통계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피해대응 방식 평균소요기간보다 훨씬 적은 기간이다. 앞서 언급된 방식들에 비해 절차와 중재관련 각종 법규, 특히 신속절차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평균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지식재산 분쟁에서 중재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지식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의 대응방안으로 법원의 소송 제도를 이용하거나 아예 무대응을 선택하는 경우들은 아직 중재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재제도가 많은 효용성을 갖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중재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지식재산중재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에 보다 힘써야 한다.

(2) ICC 국제중재법원

ICC는 국제 상사 및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ICC 국제중재법원을 1923년에 설립했으며 2023년에 100주년을 맞이하였다.⁴⁸⁾ 이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지식과 고유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중재기구로 평가되고 있다.

ICC 국제중재법원이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구로 일컬어지는 요인으로 국제적 분쟁해결에 중요한 중립성과 개방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꼽을 수 있다.⁴⁹⁾ 중재법원 구성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국가의 변호사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1,3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12개 이상의 주요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도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최신 입법과 기술 발전 동향에 따라 분야

46) 소송에 의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특허권 기준 미국은 첫 판결까지 24개월 이상, 항소심 12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일본은 1심 14개월 이상, 항소심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중국은 1심 12~18개월 소요, 상소심은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한국의 경우 1심은 중국과 비슷하고 항소심 12개월, 대법원 12~24개월 이상 소요된다.; 박정환(2014), 전개논문, pp. 131-133.

47) 특허청(2023), 전제서, pp. 3-9.

48) ICC (<https://iccwbo.org/about-icc-2/our-mission-history-and-values/>)(2023.07.07 최종접속).

49) 장성원,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 국제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한국과학기술원, 2006, pp.51-64.

별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WIPO, APPI, WTO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기관들과 유기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⁵⁰⁾

(3)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IPO는 UN 산하의 비영리 기구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 다양한 국가의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 명부, 신속중재절차 및 비밀유지 등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⁵¹⁾ 구체적으로 WIPO 중재조정센터는 UNCITRAL 중재규칙을 근거로 WIPO 중재규칙 및 신속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⁵²⁾, 중재의 비공개성에 따른 비밀유지에 힘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WIPO 중재규칙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높다고 평가된다.⁵³⁾ 또한 2005년에 도입된 eADR은 지금까지 중재사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중재인들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면 제출을 가능케 하여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을 갖는다.⁵⁴⁾

(4)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LCIA는 1892년에 ‘런던중재회의소’로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기구로,⁵⁵⁾ 1981년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반영해 지금의 런던국제중재법원이 되었다. LCIA는 회사, 중재법원, 사무국 3단계 구조로 운영되는 민간 비영리 회사이다. 회사는 LCIA의 운영 및 개발 및 회사법 관련 업무를 하며, 중재법원은 최대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균형과 공정성을 위해 다국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은 LCIA에 회부된 모든 분쟁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⁵⁶⁾

2022년에 접수된 333건 중 293건(88%)이 중재를 통해 해결된 것처럼 LCIA는 상거래분쟁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제성에 대해 높이 평가받고 있다. LCIA의 사건 당사자 88% 이상이 비영어권의 국적이라는 점, 영국을 제외한 국적을 가진 중재인이 4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그 안에서도 49개의 국적을 가진 중재인으로 구성하여 중립성을 높였다. 그러나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서는 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지식재산분야의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가 널리 인식 및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⁷⁾

50) ICC (<https://iccwbo.org/about-icc-2/our-mission-history-and-values/>)(2023.07.07 최종접속).

51) WIPO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3854>)(2023.07.11 최종접속).

52) 김상찬·이연화(2012), 전계논문, P.105.

53) 하홍준 외 4인,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9, pp.93-98.

54) WIPO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3854>)(2023.07.11. 최종접속).

55) 김용길(2009), 전계논문, p.77.

56) LCIA (<https://www.lcia.org/LCIA/organisation.aspx>)(2023.07.11. 최종접속).

(5) 일본지식재산중재센터(Japan IP Arbitration Center; 'JIPAC')

JIPAC은 일본의 변리사회와 변호사연합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업소유권중재센터'에서 시작하여 2001년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로 변경되었다.⁵⁸⁾ 2003년에는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지식재산의 평가방법, 분쟁 형태와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IP평가연구회'를 발족시켰고, 교수, 전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특허청,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⁵⁹⁾ 그러나 JIPAC은 국가 규모에 비해 국제시장에서 영향력과 지위가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⁶⁰⁾ 이는 중재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에 기인한다. 자주적 해결의 요소가 강경적 해결에 비해 주를 이루는 중재제도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해당 사고방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⁶¹⁾

(6)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는 '대외무역중재위원회'에서 시작되어, 1988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중국의 중재법을 근거로 하여 독립된 중재규칙을 통해 지금까지 세계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등의 국제중재기구로 성장해왔다.⁶²⁾

2022년 CIETAC은 4,086건의 사건을 접수하였다. 그 중 국제사건이 642건, 국내사건이 3,444건으로 타국가의 중재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내사건 비중이 높았다. 해당 사건들의 분쟁 당사자들은 83여개의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이루어져 있고, 국제사건 중에서 양 당사자가 중국인이 아닌 분쟁이 47%를 차지한다. 또한 CIETAC의 사건은 20여 가지의 분쟁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지식재산분쟁은 4,086건 중 21건으로 약 0.51%를 차지한다.⁶³⁾ 기타 분쟁들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숫자로 파악된다.

57) LCIA, 『2022 Annual Casework Report』, 2023, pp.4-21.

58) 김영주,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仲裁研究』, 제2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9, p.134.

5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IP평가연구회 발족", BIRC, 2003.04.23. (2023.07.11. 최종접속).

60) 김갑유 외 (편),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박영사, 2017, p.111.

61) 김상수, "일본에 있어서의 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仲裁研究』, 제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1992, p.57.

62) 강유신,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경희대학교, 2011, pp.41-42.

63) CIETAC, 『CIETAC 2022 Work Report and 2023 Work Plan』, available at <http://www.cietac.org/index.php?m=Article&a=show&id=18863&l=en> (2023.07.14. 최종접속).

IV. KCAB 지식재산중재 활성화 방안

1. 지식재산중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지식재산중재 현황’을 통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중재기관들과 우리나라 주변국들을 기준으로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국가들이 현재 지식재산중재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점과 현황, 그리고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아래에서는 향후 국내 지식재산 중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IP중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행 과제로, 첫째는 중재 적격성(적합성)의 문제 해결이다. 기존의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특허의 소유권 및 양도,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들은 중재 적격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없다. 그러나 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의 경우에는 특허의 유효성에 관하여 아직까지 각국에서 법률의 정립이 되어있지 않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중재 집행 가능 여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된다. 즉, 중재판정을 받은 것과 별개로 뉴욕협약에 따른 집행에 불확실성이 증대된다.⁶⁴⁾ 뉴욕협약 제II조에서는 “subject matter capable of arbitration”라고 명시하여 중재의 사안이 각국에서 중재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⁶⁵⁾ 또한 각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자칫하면 중재판정의 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⁶⁶⁾ 따라서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명확한 법률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는 미국, 스위스 및 일본 등 일부 국가만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중재를 인정하거나, 중재의 범위를 두지 않는 등 중재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밖의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나라들은 제한적인 해석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중재법 제1조에서의 ‘사법상의 분쟁’⁶⁷⁾은 중재범위를 제한하여, 지식재산권 유효성 여부 판정 등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확인을 거쳐야 한다.⁶⁸⁾ 따라서 지식재산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64) 최소희(2012), 전계논문, pp. 20-23.

65) New York Convention Article II.

66) New York Convention Article V. 2.

67) 중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68) 최소희(2012), 전계논문, pp. 21-24.

법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그 밖에도 주변국 및 주요국들과 안정적 집행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교류도 필수적 요소로 판단된다.

둘째, 중재인의 중립성 제고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재기관들이 국제성을 갖추어 해결하고 있다. 등록된 중재인의 국적 다양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요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기관들과의 높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국제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신뢰감을 줄 것이다. 현재 KCAB 또한 지속적으로 국제중재인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있다.

셋째, 중재인과 중재기관의 전문성 역량 제고이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발전 속도와 유형의 다양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이를 충족하는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단심제인 중재의 경우 분쟁의 당사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 및 중재판정에 대한 리스크의 체감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를 고려하도록 유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⁶⁹⁾ 따라서 각국의 중재기관들은 중재인을 법조계, 실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단심제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효용가치 및 법관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의 전문성이 합리적 중재판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위험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지식재산중재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이다. 특히 중재에 대한 법원과 법조인의 우호적 인식이 필요하다. 단편적으로는, 중재가 법원과 법조인의 역할을 축소시킨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양 기관은 경쟁관계가 아니다. 즉, 중재는 법원의 업무 부담을 낮추어주고 분쟁 해결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며, 법원은 중재 판정의 집행 및 법조인의 적극적 협조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AAA는 법원 연계형으로 둘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분쟁당사자들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중재기관들은 자신의 웹페이지에 연혁 및 소개 등을 통해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있다. 나아가 ‘연례보고서’를 게재하여 지식재산중재 및 중재의 경제성, 신속성, 전문성, 국제성 등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웹페이지에 접근하기까지 기본적인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등 교육과정에 소송과 더불어 중재 제도에 대한 교육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속성과 접근성이다. 대부분의 지식재산 관련 중재기관들은 ‘신속절차’를 활성화하고 있다. KCAB는 1989년부터 신속절차를 도입하였고, WIPO 중재조정센터는 신속중재규칙을 두고 있다.⁷⁰⁾ 또한 신속성과 접근성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9) 최소희(2012), 전계논문, pp. 21-24.

70) 장성원(2006), 전계논문, pp. 58-59.

대표적으로, WIPO에서는 전자적으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으며,⁷¹⁾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전자적 중재절차 진행을 위한 중재법을 이미 2015년에 개정한 바 있다.⁷²⁾ 이러한 방법은 전자적 자료의 실효성이 점차 인정됨에 따라 국제분쟁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자국의 지식재산중재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 주요 해외 중재기관들은 급변하는 사회 및 경제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중재제도가 국제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중재 절차의 디지털화 방안을 보다 발전시킨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KCAB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 구성 방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중재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재는 이미 ODR을 통해 디지털화를 맞이하였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중재합의 체결 단계부터 중재판정문이 송달되기까지의 절차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2015년에 개정된 네덜란드의 중재법 내용과 2018년에 발표되었던 “국제중재에서 화상회의에 관한 서울 프로토콜” 초안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⁷³⁾ 다만, KCAB는 2018년 이후 ODR 시스템 구축 수준이 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법원의 전자적 시스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97%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실적이 뚜렷하지만, KCAB의 경우는 별다른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⁷⁴⁾ 즉,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 중 하나로써, 중재가 소송제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의 디지털화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계의 중재 기관들과 KCAB의 초격차를 위해서 한국의 IT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블록체인의 이더리움과 NFT 그리고 메타버스를 융합하여 지식재산 중재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보완 및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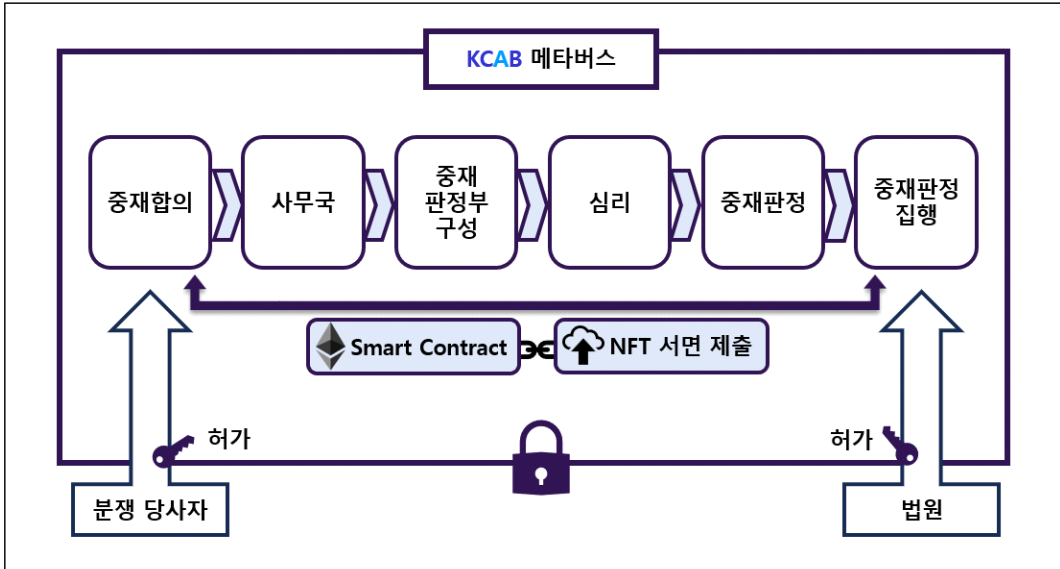
71) WIPO 웹페이지, available at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3854> (2023.07.17. 최종접속).

72) 안건형, “국제중재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貿易保險研究』, 제19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pp. 259-279.

73) 안건형(2018), 전계논문, pp. 262-277.

74) 안건형,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仲裁研究』, 제3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23, pp.29-30.

〈그림 1〉 KCAB 원-스톱 플랫폼



출처 : 저자들 작성.

해당 방안을 크게 소프트웨어 측면과 하드웨어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소프트웨어는 블록체인 기술이 배경이 되며 하드웨어는 메타버스가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블록체인이란 데이터를 기록하고 다수의 참여자가 공유하며 관리한다고 하여 분산원장이라고도 불린다. 기본적으로 원장이 분산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자의 부정행위 및 외부의 해킹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접근 수준에 따라 공개형과 허가형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방안에서는 허가형(비공개형) 블록체인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⁷⁵⁾ 비공개형은 참여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 공개형에 비해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체의 식별이 가능하여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하기 때문이다.⁷⁶⁾

이에 이더리움과 NFT (Non-Fungible Token)가 더해지면 중재절차의 디지털화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더리움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로는 스마트 계약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점과, NFT가 이더리움의 프로토콜⁷⁷⁾을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스마트 계약은 사전의 결정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으로, 지식재산 중재에서 중재판정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NFT는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하여 유일한 가치를 지니도록 할 수 있다.⁷⁸⁾ 이러

75) 이규옥, “블록체인 기반 간판결제서비스의 법적 규율 방안”, 『金融法研究』, 제18권 제3호, 2021, p.147.
 76) 김종인 외 2인,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금거래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제13권 제4호, 2021, pp.2606-2609.
 77) 통상적으로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721을 바탕으로 NFT가 활용된다.
 78) 현소진, “NFT의 발행 및 저작권적 쟁점의 논의”, 『經營法律』, 제32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pp.

한 특징은 지식재산중재 절차에서 자료 및 증거 제출에 적합하다.

중재절차의 디지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의 기술들에 더하여 메타버스가 융합되어야 한다. 메타버스란 “현실과 가상이 합쳐진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verse)의 합성어”이다.⁷⁹⁾ 해당 기술이 중재절차에 접목된다면, 사전에 합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분쟁을 해결할 때, 중재지에 대한 논쟁이 해소되는 만큼 신속성을 높여 중재로 해결하도록 유인이 가능하다. 또한 지식재산중재 절차의 대부분이 하나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시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 메타버스의 발전은 소송에 비해 분쟁 당사자 간 우호성과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의 장점을 강화시킨다. 지금까지 중재절차의 디지털화는 2차원적 성격이 강해 대체로 비대면 방식 연결의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 메타버스를 활성화 한다면 가상의 공간에서 유형화된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와 보다 공감각적인 중재를 구성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살펴건대, 메타버스라는 단일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더리움과 NFT를 통해 지식재산중재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기술적 문제, 신기술의 초기 비용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에 있어서 당장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 지식재산중재의 위상을 높임과 더불어 한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기업들의 가치 생산 활동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 점차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 소유 및 활용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분쟁은 기존의 유형물 분쟁과 달리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주의 기울여 다루어져야만 한다. 분쟁의 결과가 기업의 존폐 여부로 이어질 만큼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분쟁 해결에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식재산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특성에 더 적합하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 경험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

435-439.

79) 고선영 외 3인,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 『정보처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 P.8.

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 정도에 비하여, 지식재산중재의 활용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지식재산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지식재산산업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재의 적합성과 인식 및 실정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ii) 지식재산분쟁 사례들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iii) 국내 지식재산중재 현황을 파악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며, iv) ICC, WIPO, AAA 등 주요 해외지식재산중재 기관들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v) 우리나라 국내 지식재산중재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저자들은 국내 지식재산중재 발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특히 유효성에 관한 명확한 법률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중재인의 중립성 제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산업에 관한 전문성 역량을 높여야 한다. 넷째, 지식재산중재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재산중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근성과 신속성 개선에 관련하여, 지식재산중재 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한 원-스톱 진행을 장기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꾸준한 혁신과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지식재산중재 및 지식재산산업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미,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대상적격”, 『民事訴訟』, 제14권 제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강유신,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경희대학교, 2011.
- 고선영 외 3인,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 『정보처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
- 김갑유 외 (편),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박영사, 2017.
- 김상수, “일본에 있어서의 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仲裁研究』, 제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1992.
- 김상찬·이언화, “지적재산권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법학연구』, 제47권, 한국법학회, 2012.
- 김성룡·안건형, “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1호,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 김영주,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仲裁研究』, 제2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9.
- 김용길, “지식재산권분쟁의 재판외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 김정화, “게임 분쟁과 중재”, 『仲裁』, 34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4.
- 김종인 외 2인,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금거래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제13권 제4호, 한국IT정책경영학회, 2021.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박경희, “소프트웨어 분야 중재사건의 주요 특징 및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제언”, 『2020봄여름』, 353호, 대한상사중재원, 2020.
- 박성수, “지식재산권(IP)분쟁, 국제중재 해결 장점 많다”, 『로펌 인사이드』, 448호, 2022.06.13. available at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13/2022061300033.html.
- 박은아,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분쟁”, 『仲裁』, 34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4.
- 박정환,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적합성과 가능성에 관한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4.
- 박종삼,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관한 논점”, 『仲裁研究』,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
- 손경한·박진아, “지적재산의 국제적 분쟁해결합의”, 『仲裁研究』,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 『仲裁研究』,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 송복규, “백만기 지재위원장 “K콘텐츠 경쟁력 지키려면 지식재산권부터 챙겨야”, 『조선일보』, 2022.12.07, available at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2/12/07/TTO2RS45VJFBBLJTMC6SYLYP5I/>.
- 안건형, “국제중재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貿易保險研究』, 제19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 _____, “우리나라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仲裁研究』, 제3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1.
- _____,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仲裁研究』, 제3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23.
- 오석웅, “지적재산권분쟁과 중재제도”,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 오창석, “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국제상사중재의 유용성”, 『법학논총』, 제1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우광명·서민교,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한 ADR의 적응성”, 『貿易學會紙』, 제33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8.
-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仲裁研究』,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 _____,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재인들의 관심이 필요”, 『仲裁』, 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 이규욱, “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법적 규율 방안”, 『金融法研究』, 제18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21.
- 이동국, “IT중재(소프트웨어) 분야 중재사건 심리의 특징”, 『仲裁』, 355호, 대한상사중재원, 2021.
-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분쟁에 대한 온라인 분쟁해결과 중재”, 『중재』, 338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 이주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의 활성화 방안”, 『仲裁研究』,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 장성원,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 국제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과학기술원, 2006.
- 차상욱, “표준필수특허 관련 해외 판례와 대비한 우리 ‘삼성 대 애플’사건 판결의 재음미”, 『産業財産權』, 제6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 최소희,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仲裁』, 338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 최송자,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仲裁研究』,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 최승재,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중재제도(WIPO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仲裁』, 338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 최재호, “FTA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 특허청, “LG와 SK의 배터리분쟁! 그 생생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특허청 TV, 2021.07.14, available at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2431065097>.
- 특허청, “한국, 3년 연속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 산업재산통상협력팀, 2023.
- _____, 『2022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정책, 2023.
- 하홍준 외 4인,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9.
- 허대원, “저작권분쟁에서의 ADR제도의 이용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 제2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8.
- 현소진, “NFT의 발행 및 저작권적 쟁점의 논의”, 『經營法律』, 제32권 제2호, 2022.
- CIETAC, 『CIETAC 2022 Work Report and 2023 Work Plan』
- Elleman, S. “Problems in Patent Litigation: Mandatory Mediation May provide Settlement Solutions,”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2, 1997.
- LCIA, 『2022 Annual Casework Report』
- WIPO,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no. 489, 2004.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https://www.koipa.re.kr/home/main.do>)
-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9조.
- 중재법 제1조.
- 중재법 제3조 제1항.
- 헌법 제109조.
- CIETAC(<http://www.cietac.org/index.php?m=Article&a=show&id=18863&l=en>)
- ICC (<https://iccwbo.org/about-icc-2/our-mission-history-and-values/>)
- LCIA (<https://www.lcia.org/LCIA/organisation.aspx>)
- New York Convention Article II.
- New York Convention Article V. 2.
- WIPO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3854>)
- WTO (<http://www.wto.org>)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for Korea's Arbitr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disputes

Su Hyun Song

Un Jeon

Keon-Hyung Ahn

Korea continues to invest in the IT industry and is currently regarded as one of the five major powerhous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is status is only limited, and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does not reach a level commensurate with the status of one of the five major intellectual property pow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in 2017, which aim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n industry and provide systematic support so that the arbitration industry can become a future growth engine.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establish “the Basic Plan for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every 5 years. Great efforts must be put into establishing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at the KCAB for five years from 2024 to 2028, the Secon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erio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rbitration system to protect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tribute to more active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build an one-stop digital platform for KCAB to implement an efficient ODR system.

Key Word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rbitr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